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2022. . .

국 토 교 통 부
(건 축 정 책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2009. 10. 1., 법률 제9706호, 2009. 5. 22.)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규칙에 반영하고,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의 법령 근거조항 수정 및 기관명칭 변경

- 1) 동 규칙의 근거를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수정
(안 제1조 개정)
- 2)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 대한주택공사의 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의2제1호 및 제2조 제3항제1호 개정)

나.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 간소화

- 1)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는 소관부처에서 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2조제2항 내지 제7항 개정)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본설계도서”를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건축법 제19조제4항의</u>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인정·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건축법 제23조제4항</u>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
(생략)

②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2. 3. (생략)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당해 기본설계도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2. ~ 4. (생략)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심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2. 3. (현행과 같음)

③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u>의를 마친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u>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u> <u>⑦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도서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